



## 일본 상조회의 표준약관에 관한 주요내용

정보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팀

### I. 관혼상제상조회의 약관

#### 1. 관혼상제상조회의 현황

일본에 있어서 관혼상제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함)는 1986년에 415사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05년 3월 현재 320사 정도의 사업자 수가 있음. 한편, 선불금 잔고는 1973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각 상조회의 영업지역 내에 있어서의 회원 수를 구수로 나타내면 대략 다음과 같음.

3000구 미만	3000구 이상-5000구 미만	5000구 이상-10000구 미만	10000구 이상-50000구 미만	50000구 이상
11%	5.9%	5.9%	40.4%	36.8%

※ (사) 전일본 관혼상제상조협회 자료(<http://www.zengokyo.or.jp/zengokyo/info/no02.html>)

#### 2. 상조회의 약관 규제 연혁

상조회는 1973년 3월부터 '선불식 특정거래업'으로서 할부판매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제산업성(省)대신의 허가<sup>1)</sup>를 필요로 하고 있음. 그 이유는 상조회와 소비자와의 문제, 즉 '계약, 시행서비

스의 내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평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른 것이었음. 이러한 이유로 할부판매법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1977년 12월의 표준약관 개정

###### ■ 개정배경

1973년 3월부터 표준약관이 작성되었으나 영리목적의 상조회가 증가하였으며, 계약·시행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고충이 증가하였음.

###### ■ 개정내용

- ① 쿨링오프제도<sup>2)</sup> 도입
- ② 추과금(초과비용)정수를 명확히 정함
- ③ 계약제한조항의 일정한 완화

##### (2) 1984년의 할부 판매법 개정

###### ■ 개정배경

판매신용거래에 있어서 구입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임.



1) 허가조건에 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근거하며, 표준약관도 작성해야 함.

2) 쿨링오프의 문서 예는 <자료1> 참조.



■ 개정내용

- ① 쿨링오프제도의 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
- ② 가입자의 제기에 의해 언제든지 해약 가능함

(3) 2000년의 할부판매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 개정배경

선불식 특정거래업자의 선불식 특정거래계약 약관의 기준을 정정하기 위해 할부 판매업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음.

■ 개정내용

1) 선불식 특정거래업자에 관한 선불식 특정거래계약 약관의 기준

- ① 구입자 등이 계약에 의해 대금을 완납했을 경우, 구입자 등에게 그 취지의 통지방법을 기재할 것
- ② 구입자 등이 계약금액 이외에 지불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결정에 관해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앞서 구입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 ③ 선불식 특정거래업자가 의무로 되어 있는 영업보증금의 공탁 및 선불금 보전조치에 관해서 영업보증금 또는 선불업무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 및 선불업무보증금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할 것
- ④ 영업보증금 및 선불업무보증금에 관해 구입자 등은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 변채를 받을 수 있음
- ⑤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있어서 절차를 기재할 것
- ⑥ 해약금을 환불할 때까지의 기간 기산일을 「해약해제 날」에서 「해약해제의 신청이 있었던 날」로 변경
- ⑦ 구입자 등이 해약에 관해 상의·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할 것

⑧ 계약에 관한 상품 및 지정서비스의 종류 또는 범위에 관해서 사실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실제의 것보다도 유리하게 사람을 오인시키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

⑨ 약관내용을 충분히 숙독시킬 것 및 선불식 특정거래업자가 선불금의 합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수에 관해 선불금 보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를 붉은 글자로 기재할 것

⑩ 해약제기부터 적립금의 환불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

2) 선불식 특정거래업자에 대한 업무의 개선명령 요건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정해진 약관기준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업무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4) 2006년의 할부판매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 개정배경

할부판매법(이하 '법'이라고 함)에 있어서 선불식 특정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관혼상제상조회(이하 '허가사업자'라고 함)는 법에서 규정한 장보에 근거해 선불식 특정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부터 보관한 예약 선불금을 적절히 관리하며, 예약선불금의 합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허가사업자 중에는 예약선불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별도로 설립한 회사 등에 구입자 등을 불이익이 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적시키고 있으며, 선불금 보전 조치를 회피하려는 사업자가 판명되었음.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와 선불식 할부 판매업에 관해서 선불식특정거래업과 동등의 규정이 있었으므로 개선명령의 발동요건을 통일하려고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 개선내용

법 제20조의2 및 법 제35조의3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개선명령에 관해서 이하의 항목을 추가하였음.

- ① 허가사업자가 강구한 선불금보전조치의 액수가 기준액을 하회할 경우
- ② 대리점의 대표자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 ③ 구입자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사항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에 관해 적절한 설명이 없었을 경우
- ④ 허가사업자가 구입자 등을 무허가 법인 등에게 이적한 경우 또는 구입자 등의 동의 없이 법령상의 규정의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

## II. 표준약관에 관한 업계의 가이드라인

(사) 전일본관혼상제상조협회(이하 '전상협'이라고 함)에서는 상조회와 소비자와의 적절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모델약관을 작성하고, 가맹상조회<sup>3)</sup>의 약관<sup>4)</sup>에 관해 감수를 하고 있음. 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상조회시스템의 설명 및 계약서면 등의 작성

가맹상조회는 외판원이 권유를 할 때에 소비자에게 상조회의 시스템을 충분히 설명하며, 계약약관을 전달하고 별지 등에서 수령한 것에 관한 수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 쿨링오프(Cooling-off period)제도

쿨링오프의 규정은 계약약관에 붉은 글씨와 붉은 색 테두리로 표시하며,<sup>5)</sup> 기간은 권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8일 간으로 기재하고 설명 후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고 있음.

### (3) 해약절차 장소

가맹 상조회는 해약 수속을 실시하는 장소 등의 문의처, 전화번호를 각사의 계약 약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4) 해약 수수료의 유무

가맹 상조회는 권유에 있어서 시행 전의 해약에 대해 해약 수수료가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5) 해약 반려금의 지불기한

(사) 전일본관혼상제상조협회에서는 가맹 상조회에 대해 해약 반려금을 신속하게 환불하도록 주지도도모하고 있으며 해약신청이 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또한 2002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 한 계약의 해약 반려금은 원칙적으로 해약신청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입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되어 있음. 입금액은 가입자의 지불완료 금액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임.

### (6) 해약시에 필요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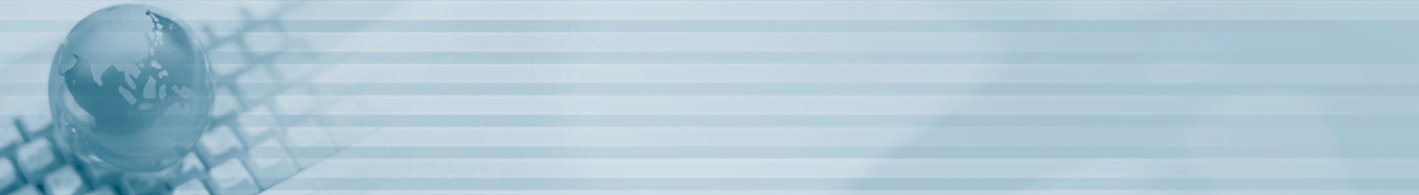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사) 전상협에서는 해약 수속에 있어 본인 확인을



3) 전국의 상조회 약321사 중에서 268사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자세한 것은 <http://www.zengokyo.or.jp/zengokyo/info/no02.html> 참조

4) 가맹상조회의 약관 예로써 자료2 참조

5) 원문은 붉은색이나 인쇄기술상 파란색으로 처리함(편집자 주)



위해,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증 등 필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가입자 본인 이외의 해약 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의 인감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있음.

**(7) 계약내 비용 · 계약외 비용의 유무**

가맹 상조회에서는 가입시 계약 약관에 근거해, 계약내 비용 및 계약외 비용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고 있음.

**III. 상조회의 표준약관에 대한 주무부처 및 위원회**

주무부처 : 경제산업성 산업정책국 거래신용과  
(2000년도의 명칭)  
경제산업성 상무(商務)유통G 거래신용과(2006년도의 명칭)  
위원회 : 산업구조심의회 할부판매 분과회 할부거래 소위원회

**IV. 상조회 해약에 관한 소비자상담 사례<sup>6)</sup>**

**■ 상담내용**

권유되어 전날 상조회의 계약을 했지만, 생각이 바뀌서 쿨링오프(cooling-off)를 하고 싶는데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기간의 도중이나 서비스 제공 전에 해약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울러 해약했을 경우의 해약 수수료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6) 출처: 近畿經濟産業局 消費者相談室 2007년 8월 2일 (<http://www.kansai.meti.go.jp/4syokei/jirei/jirei10.html>)

**■ 회답**

상조회는 선불식 특정거래업에 해당해 할부판매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조회의 계약은 할부판매법상의 쿨링오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상조회 스스로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쿨링오프가 정해져 있어 신청 한 날로부터 8일간은 쿨링오프가 생깁니다.

상조회란 예·저금과는 달리 선불 할부 방식으로 회원으로부터 부금을 보관해, 관혼상제에 관련되는 지정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 계약입니다.

해약 시에는 가입자의 지불금액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해, 각각 약관으로 정해진 환불금이 환불되게 됩니다.

해약 수수료에 관해서는 (사) 전상협이 작성한 표준약관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동표준약관에서는 복수구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 해약했을 경우의 환불은 각 계약금액을 합산해 일괄한 금액으로 해약 환불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구와 단수구에서는 약간 환불의 금액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계약시의 약관을 확인해 주십시오.

**■ 코멘트**

할부판매법에 근거해, 회원의 해약권이 보증되고 있어 경제산업성에서는 해약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수속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약 신청서류를 상조회측이 수리하고 나서, 45일 이내의 환불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현행의 규정에 근거해 대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자료 1> 쿨링오프의 문예

계약해제 통지

다음 계약을 해제 합니다

계약연월일  
서면수령일(※전화권유 등 계약일과 수령일이 상  
이할 경우)

상품명  
계약금액  
판매담당자  
신판

상품을 즉시 인수하고, 이미 지급한  
○○○원을 지급으로 지불해 주십시오.

2007년    월    일

판  
매  
점  
앞

〒 □□□-□□□

□□□

시   구   동

번   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님

계약자 주소  
성   명

계약해제 통지

다음 계약을 해제합니다

계약연월일  
서면수령일(※전화권유 등 계약일과 수령일이 상  
이할 경우)

상품명  
계약금액  
판매점(가맹점)  
판매담당지점 · 담당자

2007년    월    일

신  
판  
회  
사  
앞

〒 □□□-□□□

□□□

시   구   동

번   호

주식회사 ○○ 신판

계약자 주소  
성   명

## ▣ <자료 2>업계 가이드라인에 의한 계약 약관의 예

### 주식회사 아이치관혼상제 상조회 계약약관 (2006년 9월 20일부터 적용)

상조회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 약관의 내용을 잘 읽고 신청해 주십시오.

(주) 아이치관혼상제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함)와 상조회 가입자(이하 '가입자'라고 함)는 하기에 정하는 것에 의해 상조회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함.

#### 제1조(계약목적)

이 계약은 가입자가 장래 실시하는 관혼상제(제3역무(추석 장식)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비해 소정의 월부금을 선불로 적립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관혼상제와 관련되는 역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취득하며, 상조회는 가입자의 청구에 의해, 관혼상제와 관련되는 역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계약은 관혼상제와 관련되는 역무 서비스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은행, 신탁 등 금융기관에서의 예금과 달리, 보전하는 월부금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2조(목적범위)

목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혼례를 위한 시설제공, 의상대여 그 외의 서비스제공 및 이것에 부수하는 물품급부 및 그 중계
2. 장례식을 위한 시설제공, 제단대여 그 외의 서

비스제공 및 이것에 부수하는 물품급부 및 그 중계 상기(2)의 상제에 부수하는 통과 의식(추석 장식)과 관계되는 역무 서비스 등의 제공

#### 제3조(가입신청)

1. 상조회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상조회가 정하는 것에 의해, 가입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한 후에, 1회 이상의 월부금에 상당하는 예약금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상조회는 그 신청에 임하여 약관을 건네 드리겠습니다. 다만, 심사 후, 가입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 예약금의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제4조(가입자의 명의변경)

가입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 변경(이용권, 해약 환불 청구권을 포함합니다)은 미리 상조회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속 시에는, 가입자증 및 가입자, 양수인 쌍방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의 인감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 수수료로써 1건당 525엔(소비세 포함)을 받습니다.

#### 제5조(가입자증 발행)

상조회는 제3조의 가입 신청서에 의해 소정의 수속을 실시하며, 신속하게 상조회의 가입자인 것을 증명하는 「가입자증」을 가입 신청자에게 건네 드리겠습니다. 가입자증은 역무 서비스 등의 제공을 받을 때에 필요하므로, 그때까지 주의 해 보관해 주십시오. 또한 제3조의 예약금은 월부금으로 충당합니다.

**제6조(가입자증 재발행)**

가입자증을 분실 등에 의해 재발행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가입자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재발행 하겠습니다. 이 경우, 구가입자증은 무효가 됩니다. 재발행의 수속에 있어서는, 그 의뢰가 가입자 본인으로부터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의 인감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발행의 수수료로써 1건당 525엔(소비세 포함)을 받습니다.

**제7조(주소변경 등 신고)**

가입자가, 주소, 연락장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조회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조회가 안 최종의 주소 또는 거처로 발한 통지는 통상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을 경과했을 때에 가입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연락장소 등이 변경이 되어, 상조회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 서비스 등의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제8조(영수증 발행)**

월부금의 지불 시 마다 상조회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예금계좌 대체의 경우는, 통장예의 기재로 영수증을 대신하겠습니다.

**제9조(의무제공 종류(계약금액, 부금액, 지불방법 등))**

계약금액, 월부금액, 지불방법 및 지불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다만, 시공시에 소비세 상당액을 받겠습니다. 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한 지불 총액은 계약금액이 240,000엔의 경우에는 252,000엔, 180,000엔의 경우에는 189,000엔이 됩니다(표 1 참조).

**제10조(할인제도)**

월부금의 일괄지불에 대해서는 5%의 할인특전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 제공 후의 일괄 지불에 대해서는 할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1조(의무제공 내용)**

상조회가 제공하는 목적별의 의무서비스 등의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제12조(의무제공 시기)**

- 상조회는 이 계약 약관에 근거해 계약 성립후 180일을 경과한 날 이후이면, 가입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대로, 협의에 의해 결정한 날에 그 계약에 따라서, 의무 서비스 등의 제공을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완납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원칙으로서 일괄 정산을 해 주십시오. 또한 할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겠습니다.
- 계약시부터의 연수가 경과해 계약한 의무 서비스 등의 대역·물품의 급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시의 의무 서비스 등 중에서 계약시의 품목의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대체해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표 1〉 계약금액, 부금액, 지불방법 등

계약금액	부금액수	월부금회수 및 기간	지불방법	기불시기
240,000엔	매월 3,000엔	80회 80개월	계좌대체	취급금융기관 지정 날
	매월 5,000엔	48회 48개월		
180,000엔	매월 3,000엔	60회 60개월		
	매월 5,000엔	36회 36개월		

### 제13조(조기이용비)

이 약관에 근거하여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역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240,000엔의 경우에는 33,600엔, 180,000엔의 경우에는 25,200엔의 조기 이용비(소비세 포함)를 받습니다.

### 제14조(계약 이외의 의무제공 및 비용의 결정시기)

가입자가 “이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의무 서비스 등의 제공” 또는 “이 계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무 서비스 등보다 그레이드가 높은 내용의 의무 서비스 등의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로, 계약금액 이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조회는 그 비용의 결정에 대해서, 의무 서비스 등의 제공에 앞서 미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설명하며, 가입자에게 양해를 얻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해 주십시오.

### 제15조(월부금 종료 후의 취급)

상조회는 가입자가 월부금의 지불을 종료했을 경우에는, 종료한 것을 서면(계좌 이체 만료의 소식)으로 통지합니다. 또한 월부금의 지불 종료 후에도, 이 계약이 정하는 각 의무 서비스 등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이용할 권리는 보증됩니다.

### 제16조(역무서비스 등 이용 후의 분할지불 취급)

가입자가 월부금의 완납전에 이 약관에 정하는 역무를 받게 되어 할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카드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카드계약에 근거해 지불 받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의 카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 주십시오.

### 제17조(영업보증금 등 선불금보전조치)

상조회는 할부판매법에 근거해 가입자로부터 보관한 월부금의 1/2에 상당하는 액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관과 영업 보증금 및 전수업무보증금의 공탁 및 공탁 위탁계약을 체결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증금 및 전수업무보증금의 공탁처

(법무국) 名古屋法務局 名古屋市中区三の丸2-2-1

전수업무보증금 공탁 위탁계약 수탁자

(보증기관 등)

상조회 보증 (주) 東京都港区虎ノ門5-13-1 40MTビル

일본할부 보증 (주) 東京都港区虎ノ門2-8-1 虎ノ門電気ビル

다만, 위 기관은 상조회의 형편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은 당사 상담 창구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 제18조(가입자의 권리보호)

상조회가 할부판매법 제27조(보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때, 계약 체결의 금지 명령을 받았을 때, 허가취소를 받았을 때, 영업을 폐지했을 때, 파산, 재생 수속 개시, 정리 개시 또는 갱생 수속 개시의 제기가 있었을 때, 지불을 정지했을 때)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는, 사단법인 전일본 관혼상제상조협회에 설치된 ‘상조회 가입자 의무 보증 기구’에 가맹하고 있는 다른 상조회에 이적되어 이적처 상조회의 현행 약관에 따라서 의무 서비스 등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다른 상조회에 이적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지불완료월부금에 대해 제17조에 의한 영업 보증금 및 전수업무보증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9조(이적)

1. 가입자가 상조회의 영업 지역 외에 전거하였을 경우, 그 전거지를 영업 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조회가 존재하며, 그 상조회가 이적 가입을 맡는 경우에 한정해서, 가입자의 희망에 의해(부금의 지불 회수가 10회 이상) 이적수속을 합니다. 다만, 이적 후에는 이적처 상조회의 현행 약관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2. 가입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 가입자 역무 보증기구'에 가맹하고 있는 다른 상조회가 허가 상조회의 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해, 가입자의 권리·의무를 맡아 역무 서비스 등 제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적처 상조회의 현행 약관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 제20조(계약 해제)

1. 가입자의 사정에 의해, 월부금을 소정의 지불 시기부터 4개월 이상 연체해, 한편 상조회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지불을 서면으로 독촉해도 지불이 없을 때는, 이 계약의 효력은 실효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불완료금액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해약 환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약 환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가 생겼을 때부터 5년간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2. 이 상조회 계약은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해약이란, 관혼상제와 관련되는 역무 서비스의 이용까지의 계약해제를 말하며, 해약신청이 있던 날이란, 제4항의 서류제출이 있던 날을 말합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해약했을 때는, 가입자의 지불완료금액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의 환불표의 금액을, 해약신청이 있

던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원칙으로서 가입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겠습니다. 그 때에, 환불금을 가입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입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해 주십시오.

또한 생활보호법에 근거해 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경우의 해약에 대해서는, 지불완료금액 전액을 가입자 본인에게 직접 전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급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할인을 제도 이용한 경우의 환불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환불금 표

	지불회수	지불금
3,000엔×80회 = 240,000엔	1회 ~ 5회까지	0엔
	6회	950엔
	7회 이후	매회 2,750엔 가산
	80회 완납	204,450엔
5,000엔×48회 = 240,000엔	1회 ~ 3회까지	0엔
	4회	3,450엔
	5회 이후	매회 4,750엔 가산
3,000엔×60회 = 180,000엔	48회 완납	212,450엔
	1회 ~ 4회까지	0엔
	5회	300엔
5,000엔×36회 = 180,000엔	6회 이후	매회 2,750엔 가산
	3회	800엔
	4회 이후	매회 4,750엔 가산
36회 완납	151,550엔	157,550엔

4. 해약 수속은 본인 확인을 위해 원칙으로서 제23조의 상조회 본부 또는 하마마쓰(浜松) 지부에

서 실시합니다.

- 1) 필요 서류 등은 자필에 의한 계약해제신고서, 가입자증, 인감(원칙으로서 가입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 또는 이체 계좌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 2) 수속자 본인의 확인으로서 다음 중에서 하나가 필요합니다. 운전 면허증, 각종 건강 보험증, 각종 연금 수첩 등
- 3) 수속자가 가입자 본인 이외의 경우는, 가입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위임장 및 인감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제21조(손해배상의 액수)

가입자는 상조회가 할부판매법 제27조(보전 처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 때, 계약 체결의 금지 명령을 받았을 때, 허가취소를 받았을 때, 영업을 폐지했을 때, 파산, 재생 수속 개시, 정리 개시 또는更生 수속 개시의 제기가 있었을 때, 지분을 정지했을 때)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또는 “이 계약에 근거하는 역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등” 계약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조회는 가입자의 지불완료금액에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불합니다.

#### 제22조(영업지역)

상조회의 영업지역은 아이치(愛知)현, 기후(岐阜)현 및 시즈오카(静岡)현으로 합니다.

#### 제23조(문의 상담창구)

이 계약에 대한 문의 등은 다음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아이치관혼상제 상조회 본부  
(주소) 名古屋市中央区正木 1-2-8

(전화) 052-331-9621

주식회사 아이치관혼상제 상조회 하마마쓰(浜松)지부

(주소) 静岡県浜松市上島2-10-5

(전화) 053-412-6551

또한 아래와 같이 (사) 전일본 관혼상제상조회 소비자 상담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사) 전일본관혼상제상조회 소비자 상담 센터

(주소) 東京都港区虎ノ門3-6-2 秋山ビル 7階

(전화) 0120-03-4820(프리다이얼)

#### (개인정보 취급)

#### 제24조(개인정보 수집·등록·이용에 관한 것)

당사는 본약관에 근거하는 상조회 계약과 관련되는 시공·선전 인쇄물의 송부 등 영업 안내·관혼 및 상제와 관련되는 관련 업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가입자의 이름·주소·계약 번호·계약 코스명·금융기관 입금 계좌·가입자의 선불금 잔고·연령·생년월일·전화 번호·e-mail 주소·가족의 이름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직체제의 구축 및 사내 규정의 책정을 실시해, 미리 문서에 의해 가입자의 동의(확인서)를 얻어 수집·이용합니다.

#### 제25조(제3자 제공에 관한 것)

당사는 전조와 관련되는 업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의 타부문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별도 팜플렛 혹은 홈페이지 등에 기재한 정보 제공처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비의 인출, 선전 인쇄물의 송부 등 영업 안내를 실시하는 경우는, 미리 문장에 의해 가입자의 동의(확인서)를 얻어 제공합니다(http://

www.gojokai.com/).

#### 제26조(선전인쇄물의 송부 등 영업안내 정지에 관한 것)

가입자는 선전인쇄물의 송부 등 영업안내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개인정보의 개시·정정·삭제에 관한 것)

가입자는 당사에 대해서 가입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시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등록 내용이 부정확 또는 잘못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에 의한 개시의 경우는, 취급 수수료로써 525엔(소비세 포함)을 받습니다.

#### 제28조(개인정보에 관한 문의)

선전 인쇄물의 송부 등 영업안내 정지 신청이나 개인정보의 개시·정정·삭제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당사 서비스과(서비스과장)로 연락 주십시오.

(주)아이치관혼상제 상조회 서비스과(서비스과장)

〒 460-0024 名古屋市中区正木1-2-8

TEL : 052-331-9621

이 인쇄물은 (사) 전일본관혼상제상조회회의 감수를 받은 것입니다.

감수번호 4-03312

감수연월일 2006년 7월 24일

#### 클링오프제도

가입자는 본서를 건네주어 가입 신청서를 받은 날을 포함한 8일간은 제23조에 규정하는 상조회 「문의 상담 창구」에 서면(엽서·봉서·간이 등기 우편 등)으로 통지하는 것에 의해, 이 가입 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했을 때로부터 생깁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자에게는 입금 수수료등 반환하는 비용의 부담은 없으며 이미 지불되어 있는 예약금등은 전액 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클링오프의 통지에 필요한 엽서·봉서·간이 등기 우편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해 주십시오.

#### 소비세에 대한 취급

이 계약약관에 있어서의 소비세는 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 소비세는 역무가 이용되었을 때(시행시)에 보전하겠습니다. 다만, 소비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① 계약시의 역무내용을 변경하여 이용되었을 때 해당 역무제공의 대가액수가 변경된 경우는, 이용되었을 때의 소비세율로 하겠습니다.

② 해당 역무제공의 대가액수에 변경이 없을 경우는, 계약시의 소비세율로 하겠습니다.

(2) 수수료·조기 이용비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 발생시의 그 소비세율로 하겠습니다.

정 명 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